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월 11일

○ 회부일자 : 2006년 1월 12일

□ 제안 이유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1항)

○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제3조제3항)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함(안제5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개정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 검토 의견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검토한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을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통일된 지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나,

<참고자료 1 :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참조, p.6>

- 다만,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참고자료 1>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번호	위원회명	관련 조례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
2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4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위원회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5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6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7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주) 충청북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중 조례상 수당지급이 명시된 위원회 현황임.